

독도문제의 「발생시점 · 위치 · 크기 · 속도」의 편견에 관한 연구

최 장 근*

(e-mail: nihonbu@daegu.ac.kr)

目次

1. 들어가면서
 2. 독도문제의 발생시점에 대한 편견
 3. 독도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편견
 4. 독도의 울릉도 속도에 대한 편견
 5. 맺으면서
-

1. 들어가면서

고지도나 고문헌에는 독도에 관한 역사적 권원과 관계되는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다. 이들 기록들 중에는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두 섬이 존재한다는 내용들이다. 한국은 울릉도와 더불어 존재하는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 무주지 선점론에 의한 ‘죽도’편입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영토로 해석되는 1905년 이전의 다양한 역사적 권원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독도의 시대적 상황은 매우 중요하다.¹⁾ 국제법학자들은 섬의 시대적 상황을

* 대구대학교

- 1) 독도의 경우는 작은 바위섬이다. 한국의 울릉도에서 연간 50일-60일 정도 보이는 섬이다. 일본의 오키(隱岐) 섬에서는 보이지 않는 섬이다. 독도는 한일 양국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독도의 가치는 유사이래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와 존재했던 시기로 구분된다. 독도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지역에 홀로 존재하는 섬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명칭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독도에 새로운 명칭이 생성되었다는 것은 그 시기에 섬이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으로 섬에 대한 명칭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동북아역사재단이 조사한 독도가시일수에 의하면 1년간 울릉도에서 독

무시하고 판례를 활용하여 영유권을 결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판례도 영토문제 해결에 유용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독도의 경우처럼, 무인도이고, 섬의 가치가 시대적으로 달리 나타날 경우에는 특정한 판례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일본영토론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독도에 대해 현재적 관점에서 흔히 사람이 거주하는 일반적인 섬이라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독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편견으로 생긴 독도의 굴절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독도문제의 발생시점에 대한 편견을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독도의 위치에 대한 편견을 분석한다. 그리고 독도의 가치 발생 시기에 관한 편견, 독도명칭에 대한 편견 순으로 분석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편견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하겠다.²⁾ 본 연구의 성과는 굴절된 시각에 의한 국제법적 이론과 영유권 주장의 논리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 독도문제의 발생시점에 대한 편견

(1) 독도문제의 발생시점에 관한 논점

독도문제는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영토문제는 역사적 권원보다는 실효적 관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실효적 관리는 일반적으로는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정치적 결정으로 역사적 권원이 경시될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영토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역사적 권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역사적 권원을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역사적 권원 중에 특정한 시대의 사건만으로 영유권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과 오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독도는 역사적인 권원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결정을 통해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한국영토이다.

사실 한국영토론자들은 독도가 고대시대부터 고유영토였기 때문에 분쟁의

도를 관찰하였는데 1년 동안 독도가시일수는 15~16일 정도였다. 따라서 독도의 연간 가시일부는 고정적이지 않다.

2) 다양한 연구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清三郎),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등 일본영토론자들의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영토론자들은 고대시대의 독도는 한국이나 일본 양측 모두 그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쪽의 영토도 아니었다, 그런데 일본은 17세기에 독도를 발견하여 오야(大屋), 무라가와(村川) 두 가문이 어업에 종사하여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관리했기 때문에 일본의 고유영토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 모두 독도의 발견 시기는 다르지만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한일 간의 독도문제는 독도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에 걸쳐 분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미 고유영토론을 둘러싼 역사논쟁을 넘어 영토분쟁이 되었다. 독도문제는 그 초점을 고유영토론에 의한 역사문제로 취급함으로써 독도문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시대별 혹은 사건별 독도가 어느 쪽에 영유권이 존재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독도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독도의 영토권 확립과 양국 간의 분쟁 등을 고려했을 때 7번에 걸쳐 각각의 독도문제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우산국시대의 독도, 17세기의 안용복에 의한 울릉도분쟁시의 독도, 조선의 울릉도개척과 독도, 일본의 무주지 선점조치에 의한 죽도³⁾편입, 연합국의 대일평화조약체결과 독도, 한국의 평화선선언과 독도, 한일협정과 독도 등으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이하에서 그 특징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시대별 독도의 영유권문제

① 고대 우산국의 독도영토 성립과 일본의 편견

일본영토론자들은 사료에 명확한 기록이 없다고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편견이다. 관련 사료를 통합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일본영토론자들은 이러한 사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가능한 상황을 유추하여 독도도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국영토론자들의 논리를 부정하고 있다. 역사해석은 일면적 사료해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면적 해석으로도 이루어진다. 일본영토론자들은 명확한 일면적 기록이 없으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체로 한국영토론자들은 독도가 우산국의 일부였다는 주장이다.⁴⁾ 우산국은 해상국가로서 울릉도를 기반으로 존재했던 국가였다. 독도는 사람이 거주할 없는 섬이지만 울릉도에서 보이는 거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울릉도 사람들의 생활문화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때로는

3) 일본영토로서 나타낼 때는 「죽도」, 한국영토로서 나타낼 때는 「독도」라고 표기.

4)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pp.27-29. 『三國史記』新羅本紀, 智證麻立干 13年, 卷4, 列傳 卷44 異斯夫條. 『萬機要覽』軍政編.

해 뜰 때 동녘에 보이는 섬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고,⁵⁾ 때로는 독도를 울릉도를 기반으로 하는 울릉도민들의 생활거주공간의 경계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우산국은 신라에 복속되었고, 그 이후는 고려와 조선의 영토,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영토로서 계승되어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한국영토론자들의 주장에는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 침략이 우려되었던 조선시대,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기반으로 존재했다는 고대시대의 기록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⁶⁾ 이러한 주장을 전적으로 모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요컨대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도 우산국의 일부였다고 하는 한국영토론자들의 주장에는 다소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사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 것과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조차 부정하는 일본영토론자들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② 안용복사건에 의한 독도영토 재확인 과 일본의 편견

조선시대에는 이규원 검찰사를 울릉도에 파견하기 이전까지는 울릉도와 독도를 공도정책(쇄환정책)으로 관리해왔다. 공도정책(쇄환정책) 중에 있던 울릉도에 안용복과 일본인이 잠입함으로써 안용복사건이 발생되어 조선조정에서는 독도의 존재를 재확인하게 되었다. 조선조정이 1625년부터 1692년⁷⁾ 사이에 울릉도관리를 소홀히 하여 잠입하는 자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조선조정은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막부(幕府)에 대해 명확히 확인했다. 일본인들 중에는 조선의 공도정책(쇄환정책)과 조선의 국내사정으로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일본인이 잠입한 사실을 가지고 무주지인 울릉도를 선점하여 실효적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편견과 오해이다. 고문헌 상으로 보면 울릉도는 고대시대부터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울릉도를 영토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⁸⁾ 울릉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은 일본 측의 막부에서도 인정했던 사실이다.⁹⁾

안용복사건 때에 한일 양국 간에 독도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때에는 울릉도는 국가 간의 영유권 문제가 되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

5) 권오엽(2009) 「우산국과 종교」, 『독도와 안용복』 충남대학교출판부, pp. 70-98. 최장근(201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조작의 계보』 제이앤씨, pp. 337-372.

6) 최장근, 『독도의 영토학』 대구대학교출판부, 2008, pp. 83-85.

7) 오야, 무라가와 가문이 울릉도에 잠입하던 시기의 조선왕조는 인조(1623-1649), 효종(1649-1659), 현종(1659년-1674)시기로서 재위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아 대내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숙종(1674-1720)은 재임기간이 긴 것으로 보아 정권이 안정된 시기로서 울릉도의 영토관리에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8) 『三國史記』新羅本紀, 智證麻立干 13年, 卷4, 列傳 卷44 異斯夫條.

9) 池內敏(2008.2) 「安龍副と鳥取藩」 『鳥取地域史研究』 第10号, pp.17-29. 内藤正中·金柄烈(2007) 『歴史の檢証獨島·竹島』 岩波書店, pp.46-61.

다. 그것은 독도의 가치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당시로서는 독도에 대해 특별한 가치를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도해면허를 행한 것도 울릉도뿐이었기 때문에 울릉도 도해만을 금지했던 것이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정부가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영토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막부의 도해금지령은 일본 앞바다가 아닌 먼 바다에 해당되는 울릉도, 독도에 대한 도해금지였던 것이다. 안용복에 의해 독도의 고유영토론이 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영토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당시 막부는 동국여지승람에 의해 울릉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게 되었다. 사실 동국여지승람에는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도(독도)가 한국영토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도(독도)도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일본이 울릉도의 포기와 더불어 독도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등장하는데, 우산도가 등장하게 된 것은 섬 자체의 가치라기보다는 조선의 영역 중에서도 특히 동쪽 영역의 끝을 의미하는 한계의 상징적 가치이었을 것이다. 한편 일본 측에서는 울릉도의 포기와 더불어 독도에 대해서도 영역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관찬문헌에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였던 막부에서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③조선의 울릉도개척에 의해 독도영토 재확인파 일본의 편견

일본영토론자들은 조선왕조가 울릉도는 개척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개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독도의 최초 발견자는 울릉도로 출항하던 일본인들이라는 주장이다.¹⁰⁾ 한국보다 먼저 일본이 독도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특히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가 1903년경부터 독도에서 강치조업을 시작했고,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 고용되어 처음으로 독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나카이 요사부로의 강치조업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이고, 또한 독도의 실효적 관리라는 것이 반드시 실제로 독도현지에서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은 편견이다.

실제로 독도의 실효적 관리는 울릉도의 관리로부터 시작된다. 독도가 무인도이기 때문에 독도자체만을 관리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 관계는 단적인 예로 「일본해 내의 죽도와 일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도-자도」 관계로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존재하는 것이다.¹¹⁾

10)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1-291.

11) 日本 太政官編, 『公文録』内務省之部1, 1877年 3月 17日條,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日本海内 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

조선조정은 공도정책(쇄환정책)을 통해서 울릉도를 영토로서 관리해왔다. 조선조정의 눈을 피해 몰래 들어간 자들이 약간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 조선인은 물론이고 어느 외국인의 입도도 허락하지 않았다. 조선조정이 1881년 울릉도에 조선인과 일본인이 잠입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882년 관찰사 이규원을 파견하여 울릉도를 조사하도록 했다. 근대적 영토로서 울릉도의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울릉도에 도민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이는 거리에 있다. 울릉도에 도민이 거주하는 시점부터 독도는 울릉도민의 삶이 터전이 되었던 것이다. 울릉도에서 보이는 거리에 있는 독도는 형상에 따라 도명이 결정되어졌던 것이다. 독도는 「돌섬」이다. 당시 독도처럼 「돌섬」으로 된 섬들을 『조선수로지』와 『일본수로지』에서는 「돌섬」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1904년 일본군함 니이타카(新高)호는 군함일지에 「독도(獨島)라고 쓴(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¹²⁾ 이미 호칭적으로는 「돌섬」이라고 부르지만 문헌기록상으로는 「독도(獨島)」라고 표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호칭과 문헌기록상의 명칭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영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독도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독도에서 실질적으로 강제조업을 하지 않아도 조선정부가 영토로 인식하여 영토로서 관리하였다면 그것은 실효적 영토관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일본이 강제조업을 했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독도를 관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오늘날 강치가 멸종된 것은 당시 일본인들이 지나친 강제포획으로 멸종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영토 독도에 대한 경제적 약탈에 해당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④ 무주지 선점조치에 의해 신 영토 죽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편견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에 한국측에 역사적 권원을 갖고 있는 독도에 대해 무주지라는 명목으로 죽도편입조치를 취했다. ‘시마네현(島根縣) 고시40호’가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편견이다.

사실 일본의 죽도편입조치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국제법상의 영토취득 방법은 ‘무주지선점’ 이론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주지여야 하고, 그것이 무주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국가에 통보를 해야 한다. 게다가 편입주체는 국가여야 한다.

그런데 독도는 이미 울릉도와 더불어 한국이 관리하고 있던 한국영토로서 무주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시마네현 고시40호는 중앙정부가 내밀히 결정한 것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의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는 러일전쟁 중에 열강

12) 『軍艦新高號行動日誌』1904年 9月 25日條, 日本防衛廳戰史部 소장. 원내용은 “조선 사람들은 리앙포섬을 독도라고 쓴다”라고 되어있음.

들로부터 일본의 침략성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은밀히 지방정부차원에서 고시했다. 일본영토론자들은 중앙정부의 고시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각의결정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의 의사반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각의결정이라는 것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으로 공공연한 영토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고시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메이지정부는 1869년 조선국정조사를 통해 독도가 한국영토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편입조치사항을 한국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를 보더라도 ‘죽도’¹³⁾편입조치는 타국의 영토를 은밀히 도취한 것으로 국제법상의 영토취득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 합법하기 때문에 독도침략과 무관하다. 통고의무가 없다. 지역신문에 보도되었다. 각의결정이 있었기에 지방고시라도 문제가 없다」¹⁴⁾라고 하는 주장들은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영토취득조건에 미치지 못한 만큼 일본의 주장은 변명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변명의 크기만큼 타국영토의 침략성의 크기에 해당된다.

사실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조선정부의 건국과 더불어 울릉도와 더불어 조선영토라는 사실은 서양지도, 일본지도, 조선지도에 나와 있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영토론자들은 죽도영토편입의 정당성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첫째로 국제법적 합법적인 조치이다. 둘째로 독도가 1905년 이전에 무주지였다. 세 번째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한 적이 없다. 넷째로 한국의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등장하게 된다. 일본이 주장하는 설이 정당하려면 독도이 영토적 권원을 보증하는 고지도, 고문헌 자료를 모두 부정해야 만이 가능하다. 사실은 대부분 한국영토적 권원을 부정할 수 없는 사료들이다.¹⁶⁾ 그렇다면 일본의 주장은 억지가 되는 것이다.

1905년 일본의 ‘죽도’편입조치에 대해 대한제국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로서 「칙령41호」를 제시하여 일본의 죽도편입을 부정했다.¹⁷⁾ 그 후 일본은 강제로 한국을 병탄하여 독도는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를 36년간 지배했다. 1905년 독도영토의 침탈시도는 1910년 한국 영토침략을 위한 최초의 징후였던 것이다.

13) 독도에 대해, 일본이 편입했다고 하는 ‘죽도’를 지칭할 때는 죽도라고 표현한다.

14)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古今書院, pp. 143-189.

15) 林子平 「三國接壤地圖」 1785, 梁崎延防 「朝鮮國細見全圖」 1873, 日本海軍省 「朝鮮東海岸圖」 1870.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IN 677호의 부속지도」 1946. 연합국, 「구일본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 부속지도」 1946.

16) 최장근(201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조작의 계보』 제이앤씨, pp. 337-372.

17) 송병기편(2004.) 『독도영유권자료선집』 자료총서34,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선집, pp. 1-278.

⑤ 대일평화조약에 의한 독도영토 재확인 과 죽도영토 재확인이라고 하는 일본의 편견

대일평화조약에는 한국영토를 결정하는 항목에서 일본영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라고 했다. 여기에 일본은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확정되었다는 편견이다.¹⁸⁾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전으로 일본의 침략한 영토는 포츠담선언에 의거해 일본영토에서 분리되게 되었다. 조선독립이 확정되었다. 연합국은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를 특별히 다루지 않고 독도를 한반도의 일부로서 한국영토로 결정했다. 연합국은 독도를 제국주의가 침략한 영토로 분류했다. 즉 일본의 죽도 편입조치를 불법으로 다루었던 것이다. 한국은 독립과 더불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게 되었다. 연합국도 SCAPIN 677호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분류했고, SCAPIN 1033호로 맥아더라인을 설정하여 한일 간의 어업경계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죽도 영유권을 제기하여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하려고 미국에 로비했다. 그 결과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연합국에 대해 독도를 두고 서로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노력했지만, 영연방국가가 미국의 부당함을 지적하여 결국은 연합국측은 대일평화조약에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묵인하는 상태에서 독도문제의 처리를 회피했던 것이다. 독도문제에 대해 연합국이 한국의 실효적 관리를 인정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해결에 위임했던 것이다.¹⁹⁾ 그런데 일본이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연합국이 한국의 실효적 지배 상태를 인정했기 때문에 한국영토론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²⁰⁾

⑥ 한국의 평화선 선언을 일본의 죽도영토 침략이라는 일본의 편견

일본정부는 한국이 선언한 평화선을 두고 일본의 영토인 죽도에 대한 한국의 불법적이고 무력적인 점령조치라고 주장한다. 이는 일본의 편견이다.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연합국은 SCAPIN 677호 명령으로 1905년 시마네현(島根縣) 고시40호를 타국영토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하여 일제가 침략한 지역을 전적으로 일본영토에서 박탈하는 포츠담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독도를 역사적 권원에 따라 제주도, 울릉도와 더불어 한국영토로 처리했다. 물론 이들 조치들은 중간조치에 해당되며 최종적인 조치는 대일평화조약에서 확정짓게 되어있었다. 연합국의 당초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특히 미국은 일본을

18) 高野雄一(1962) 『日本の領土』東京大學出版會, pp. 347-349.

19) 최장근(201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조작의 계보』제이앤씨, pp. 337-372.

20) 최장근(1998) 『일본영토의 분쟁』백산자료원, pp. 33-71.

자유진영에 편입시킨다는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의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한 한국영토로서의 본질을 외면하고 일본 편들기에 나섰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편향된 인식은 영연방국가들에 의해 지적 당해서 결국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상황을 인정한 채 연합국은 영유권의 최종적인 결정을 포기하고 당사자 간의 해결로 위임했던 것이다. 한국은 SCAPIN 677호에 의거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대일평화조약에서 한국영토로서 결정될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 독도의 본질을 외면당한 채 이해타산이 우선시되어 독도의 지위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자, 한국정부는 제3국에 의지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대일강화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1952년 1월 18일 스스로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대내외에 선포하여 영토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단행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정부는 일본의 고유영토에 대해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 점거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한국이 연합국의 명령에 의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은 연합국에 의지하여 국제법적 정의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을 기다고 있었는데, 미국이 독도의 본질을 외면하고 영토주권을 왜곡하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독도수호활동의 일환으로 평화선을 선언했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선택은 독도영토의 본질왜곡을 바로잡는 아주 정당한 조치였다. 이로 인해 독도가 한일 간의 영토문제(분쟁)로서 표면화되었지만, 일본의 죽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가 침략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불과하다.²¹⁾

⑦한일협정에서 한일 양국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합의했다는 일본의 편견

일본은 한일협상에서 「한일 양국은 현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외교적 합의로 해결한다.」²²⁾고 하는 항목에 의해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본의 편견이다.

일본의 패전으로 조선이 독립이 되고,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로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한일 양국은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거듭했다. 한일협상이 15년의 노력 끝에 타결되었다. 최대한 빠른 시기에 협상을 종결한다는 방침아래 중국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독도문제였다. 한국은 협상당초부터 독도문제를 안건으로 삼을 경우에 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21) 이러한 이유로 독도문제의 온전한 해결은 국제법적 정의에 입각하여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포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22) 최장근(2010) 「현 일본정부의 '죽도문제' 본질에 대한 오해」, 『일본문화연구』 제47집, 2010, pp. 279-298.

시종일관 단호했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현안에 포함시켜 한일협정에서 체결하려고 했으나, 한국의 입장이 단호하자, 독도가 현안임을 확인한 후 협정체결 이후에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한일협정체결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일양국에 의한 비밀메모는 남겼지만,²³⁾ 한일협정 안에서 「독도」나 「죽도」라는 명칭을 명확히 표기하지 못했다. 비밀메모는 한일협정을 제한하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일본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따라서 한일협정에서 독도문제는 한국의 입장만이 관철되었던 것이다. 한일협정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한일양국이 합의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옳지 않다.

⑨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면 일본영토 죽도가 된다는 편견

일본정부는 한일협상과정에 직간접적으로 2번에 걸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한국정부에 제안한 적이 있다. 이는 일본영토로 해결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을까, 아니면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방해하여 분쟁지역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만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이 승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는 편견이다.

독도는 역사적 권원에 의거하여 현재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명백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일본제국주의가 침략한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포츠담선언에 의해 박탈되었던 제국주의가 침략한 영토를 자국영토라고 하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는 독도와 같은 명백한 특정국가의 영토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분쟁당사자간에 분쟁지역의 역사적 권원과 실효적 관리의 주체가 다를 경우,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원할 때만 국제사법재판소가 관여하게 되어있다. 독도는 역사적 권원과 실효적 관리주체가 동일하여 당사자간의 합의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명백한 한국영토이다.

일본정부는 상시적이지 않지만, 독도문제를 간간히 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하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정부가 2번에 걸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기관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했을 때의 공통점은 한국의 실효적 관리가 강화되고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이 사면초가에 달하여 영유권 주장의 효용성이 바닥이 났을 때였다. 일본은 그때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한다고 했다. 1952년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선언하

23) 최장근(2010) 「현 일본정부의 ‘죽도문제’ 본질에 대한 오해」, 『일본문화연구』 제47집, 2010, pp. 279-298.

여 일본의 독도침입을 막고 실효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을 때도 그랬고, 한일협상에서 한국이 독도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관철시켰을 때도 그랬다. 사실 한일협상에서 일본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를 들고 나온 것은 독도영유권을 포기한 것에 대한 일본국민의 반발무마용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운운은 한국의 실효적 관리강화로 인한 위기의식과 불안감의 발로라고 보면 정확하다.

최근 한국정부는 독도에 해양종합과학기지, 수중공원, 발전소 건설 등 개발 계획 안을 연달아 발표했다. 일본의 불안감과 초조감이 재발되어 또다시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안을 들과 나왔다. 이는 여론을 선동하여 “한국이 불리하기까 거부한다.”²⁴⁾라고 하는 데미지를 주어 분쟁지역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독도의 실효적 관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독도에 시설물을 건축한다든지 하여 일본국민들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마라는 일본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 조용한 외교를 선택했다.²⁵⁾ 이렇게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조용한 외교는 1998년 일본이 도발한 신한일어업협정 강요에 의해 막을 내렸다. 한국의 독도정책은 다시 실효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²⁶⁾ 이에 대응하여 일본의 우익성향학자들은 독도도발을 선동했고,²⁷⁾ 그 결과 시마네현의회는 2011년 8월 8일 만장일치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조례제정을 강행했다.

이처럼 한국정부는 분쟁지역화를 노리는 터무니없는 일본의 논리에 휘말리어서는 안 된다. 과거 보수우익 자민당정부가 왜 독도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일본 측에 영토적 권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²⁸⁾

3. 독도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편견

(1)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볼 수 없다는 편견

일본은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볼 수 없다고 한다. 이는 편견이다. 울릉도와

24) 日本外務省ホームページ、「パンフレット「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amphlet_k.pdf(검색일:2011.8.30).

25) 그 일례로 한국정부는 정광태가 부르던 「독도의 우리 땅」 노래를 금지하기도 했다.

26) 일본측량선의 독도 진입으로 인한 노무현정부의 대일성명을 발표함,

27) 下条正男(2005)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28) 최장근(2010) 「현 일본정부의 ‘죽도문제’ 본질에 대한 오해」, 『일본문화연구』 제47집, 2010, pp. 279-298.

독도간의 거리는 87.4km로서 날씨가 청명하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육안으로 서로 바라볼 수 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²⁹⁾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가 울릉도의 생활문화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보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해 고유영토로서의 중요한 요건인 생활문화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³⁰⁾ 일본의 오키 섬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한국의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것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사실상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기록은 조선대의 왕조실록에 등장한다.³¹⁾ 일본은 이런 명확한 사실마저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한국의 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부정해야 만이 자신들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일본의 논리는 아주 궁핍하다. 사실 울릉도에서는 해발 150m정도의 지점에 올라가거나 동쪽으로 10여 km전방으로 나아가면 독도가 보인다.³²⁾ 이를 부정하기 위해 전근대의 울릉도는 숲이 많이 우거져서 150m 지점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고,³³⁾ 또한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보인다는 고문헌상의 기록에 대해서는 울릉도와 본토 간에 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⁴⁾ 이러한 논리는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영토 울릉도와 독도와의 관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래야만이 독도는 한국의 울릉도와 무관한 일본과 관계있는 섬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독도를 울릉도와 관계를 차단하려고 하더라도 독도에서 보이지 않는 일본의 오키 섬과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역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屬島)로서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섬이라는 것이다.

(2) 고지도에서 독도의 크기와 위치가 반드시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편견

일본은 한반도의 고지도에서 동해에 2개의 섬이 있지만, 오늘날과 같이 정확한 크기와 울릉도 동남쪽 정확한 지점에 위치해있지 않으면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편견이다.

29)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실제로 연중 울릉도에서 독도가 몇 일간 보이는가를 관찰했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고려사지리지 등의 기록과 동일한 내용이다.

30) 현행 국제법에는 이러한 요건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영토분쟁을 다룰 경우는 분쟁지역의 특징적인 점을 무시해서 보편적인 논리에만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다.

31)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되어 있다.

32)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1-291.

33)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pp.1-291.

34) 下条正男(2005)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지도를 그릴 때는 누가 어떠한 용도로 제작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영유권과 관련해서는 영토관련지도에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³⁵⁾ 그리고 지도의 제작도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지도제작 기술과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도제작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부분이 상징적으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정보와 별 상관없이 해석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영유권을 논할 때는 독도가 작은 암초로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섬에 대한 정보도 그리 많지 않은 시기에 있어서는 섬에 대한 영유의식이 존재했나? 존재하지 않았나?가 중요한 것이다. 고지도에 섬의 형상이나 크기, 위치가 다르더라도 별 상관없는 문제이다.³⁶⁾ 이러한 현상은 과학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더욱 더 그렇다. 16세기에 그려진 동국여지승람의 총람도의 경우 동해에 우산도와 울릉도가 그려져 있다. 우산도가 울릉도 정 서쪽에 위치하고 크기도 울릉도보다 약간 작지만 비슷한 크기로 그려져 있다. 이것을 당시의 고지도, 고문헌을 바탕으로 정황상으로 해석을 해보면 동해에는 두 개의 섬이 있고, 하나는 울릉도 이고 하나는 우산도이다. 울릉도는 사람이 거주해오던 우산국의 본섬이었다. 그렇다면 우산도는 울릉도 이외에 또 다른 한 개의 섬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 섬의 명칭이 된 것이다.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산도는 오늘날의 독도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산도가 울릉도와 크기가 비슷하다는 것은 울릉도처럼 유인도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사실 독도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암초로 된 작은 섬임에 불구하고 그렇게 유인도처럼 그렸다는 것은 조선대의 공도정책(쇄환정책)으로 인하여 울릉도는 물론이고 독도에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독도인 우산도를 당시 총람도처럼 울릉도와 비슷한 크기로 그렸다고 하더라도 동해에 2개의 섬이 존재하고 그 2개의 섬은 조선영토이라는 인식을 조선조정이 갖고 있었던 것이다.³⁷⁾

독도의 위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독도가 정확하게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한다고 알게 된 것은 근대기계문명이 발달한 이후이다. 그렇다면 근대 이전에 독도의 위치가 남쪽에 있던 동쪽에 있던 북쪽에 있던 그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영토론자들은 지금까지 독도의

35) 영유권 관련지도에 날씨설명을 위한 지도를 보고 영유권을 논할 수 없다.

36) 최장근(2012.5) 「고지도상의 '우산도' 명칭에 관한 연구 -'석도=독도' 규명을 중심으로-」, 『일본 근대학연구』 제36집 근간 발행예정.

37) 당시로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또 다른 대상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유권인식이 존재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독도를 관리했다고 할 수 있다.

위치에 대해 논의하면서 동남쪽에 위치하지 않은 섬은 모두 오늘날의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편견이다. 전근대의 많은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표기하고 있었다. 울릉도 동남쪽에 정확하게 위치한 섬은 거의 없다. 이를 근대적 감각으로 해석하여 우산도는 오늘날의 독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4. 독도의 ‘울릉도 속도’에 대한 편견

일본은 18세기 『죽도도설』(1751-63)에 「오키국 송도」³⁸⁾라는 기록을 토대로 울릉도는 조선영토가 되었지만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는 1905년 나카이 요사부로가 강치의 독점권을 확보하기 이전에는 일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한 무가치한 바위섬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독도만을 목표로 독도에 도해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것은 수많은 자료에서도 증명되어진다.³⁹⁾ 따라서 일본이 주장하는 「오키국 송도」라는 민중 사이에 전래된 것을 토대로 죽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이다.

일본측 기록에서 볼 때 무라카와(村川), 오야(大谷)가문이 울릉도로 도항할 때 독도는 기항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독도만을 목표로 도항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조선측의 기록에는 안용복사건에서는 울릉도와 더불어 자산도가 조선영토라고 했고,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서도 동해에 우산도와 울릉도 2개의 섬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리적으로 보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도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던 것이다. 울릉도가 존재하기에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이 생겨났던 것이다.

반면 일본에서 볼 때 오키 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오야(大谷)와 무라카와(村川) 가문이 울릉도가 무인도라는 사실을 우연히 확인하고 울릉도를 도해하는 과정에 독도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다. 즉 울릉도와 독도가 「모도-자도」 관계임이 증명된다. 일본의 중앙정부인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해주었다. 이때에 별도로 독도가 일본영토이라든가 하여 영유권을

38) 최장근(2011) 『일본의 독도영유권 조작의 계보 -독도영토 부정과 일본신영토론 조작-』 제이앤씨, p. 70.

39) 內藤正中·金柄烈(2007) 『歷史的檢証 獨島論爭』新幹社, pp.51-198. 隱岐에 도해한 안용복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일본이 주장하는 송도(독도)-죽도(울릉도) 도해면허증에 관한 것, 메이지시대 일본정부의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관도에서 제외하는 지령한 사실, 메이지시대의 일본정부가 수로지와 국경획정 과정에서 독도를 울릉도와 더불어 일본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던 점 등이다.

주장하지 않았다.⁴⁰⁾ 오히려 1905년 러일전쟁 중 편입조치를 취하기 이전 에도 시대는 물론이고⁴¹⁾ 메이지시대⁴²⁾에서도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즉 조선시대 줄곧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5. 맺으면서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흔히 보이는 독도의 본질 특히 「위치와 크기」 「독도문제의 발생시점」 「울릉도의 속도」에 대한 편견적 시각을 고찰함으로써 독도문제의 본질을 분석했다. 이러한 편견적 시각을 바로 잡음으로써 독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본론에서 논증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본은 독도문제의 발생시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 일본은 마치 일본의 고유영토에 대해 한국이 1952년 평화선을 선언하여 강제로 무력으로 독도를 점령한 것처럼 주장한다. 사실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한국측은 다양한 시대에 영토문제의 발생으로 영토의식을 갖고 있었다. 다만 1952년 시점에서는 연합국이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문제를 본질대로 처리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처리하였기에 한국정부가 이러한 정치성을 극복하기 위해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영토문제의 본질을 바로 잡았던 것에 불과하다.

둘째로, 일본은 고지도, 고문헌에 등장하는 독도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 즉 이들 사료에서도 독도의 크기와 위치가 과학문명이 발달한 오늘날과 같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1905년 편입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내셔널리즘적인 측면에서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볼 수 없고, 고지도에서 독도의 크기와 위치가 오늘날의 독도와 같지 않으므로 독도가 아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가 아니다’ 라고한국적 논리를 부정하고, 일본적 논리를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

셋째로, 일본은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가 아니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가시거리에 있는 2개의 암초로 된 섬이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고대시대 이후 줄곧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면서 존재했

40) 内藤正中·朴炳涉(2007) 『竹島=独島論争』新幹社, pp.51-198. 근세시대에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중앙정부 간에 울릉도를 둘러싸고 국경논쟁이 발생하였을 때, 안용복이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강원도 소속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41) 齋藤豊仙(1667) 『隱州視聽合記』卷1 國代記部.

42) 日本 太政官編, 『公文錄』內務省之部1, 1877年 3月 17日條,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측에서는 독도는 울릉도 도항 시에 이정표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고, 한국측에서는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으로서 존재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독도는 무인도였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섬의 가치가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섬이었다.

【参考文献】

- 권오엽(2009) 「우산국과 종교」, 『독도와 안용복』 충남대학교출판부, pp. 70-98.
- 박병섭(2011) 「일본의 독도 dud유권 주장에 대한 관점」, 『한일 양국의 관점에서 본 울릉도, 독도 심포지움』 대구한의대학교 안용복연구소 주체, 201년 12월 2일,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관, pp. 143-165.
- 신용하(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pp.17-322.
- 최장근(2010) 「현 일본정부의 ‘죽도문제’ 본질에 대한 오해」, 『일본문화연구』 제47집, 2010, pp. 279-298.
- _____ (201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조작의 계보』 제이앤씨, pp. 337-372.
- _____ (2012.5) 「고지도상의 ‘우산도’ 명칭에 관한 연구 -‘석도=독도’ 규명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제36집 근간 발행예정.
- 池内敏(2008.2) 「安竜副と鳥取藩」 『鳥取地域史研究』 第10号、pp.17-29.
- _____ (2007) 「隠岐川上家文書と安竜副」 『鳥取地域史研究』 第9号.
- _____ (2009.3) 「安竜副英雄伝説の形成ノート」, 『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 史学 55、pp.125-142.
- 奥原碧雲(1906) 『竹島及鬱陵島』 松江：報光社.
- _____ (1906)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伝』 .
- _____ (1907) 「竹島沿革考」, 『歴史地理』 第8卷 第6号.
-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pp.1-291.
- _____ (1953) 『竹島の領有』 日本外務省条約局.
- 島根県編,=田村清三郎(1954) 『島根県竹島の 研究』、pp.1-83.
- 下条正男(2005)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 _____ (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親書377.
-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総務部総務課、pp.1-159
- 内藤正中・金柄烈(2007) 『歴史的検証 独島・竹島』 岩波書店、pp.46-61.
- _____ ・朴炳涉(2007) 『竹島=独島論争』 新幹社、pp.51-198.

要 旨

獨島は鬱陵島から見えてところにある。鬱陵島には朝鮮時代の前期と中期および後期を除き、古代時代、高麗時代、朝鮮末期から現在にまで韓国人が住んでいる。鬱陵島の人々は獨島を一つの生活文化領域として扱ってきた。このような理由で獨島は韓国領土としての歴史的根源をもっていて、現在それを基にして韓国が実効的に管理している歴史的にも国際的にも韓国領土である。しかし日本はこのような獨島に対して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日本が領有権を主張する根源はどこにあったのか。それは韓国領土としての領土的根源を否定することから始まる。その方法は現在の視点から過去の歴史根源を否定したり、日本領土であることを前提にして韓国領土としての領土的根源を否定した。具体的にみると、第1に、現在の視点から過去の歴史的根源を否定するものとしては、古地図・古文献において島の大きさや位置や形などの解釈、島の価値について時代的にそれぞれの価値があるが、それを無視して日本が領土的措置をとった時期のみを中心として海驢漁業をしたという経済的価値のみを基準にして日本領土であるということ、島の名称についても時代的背景、発見者によって違う名称が命名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現在の名称である獨島ではないものはすべて韓国領土としての根源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キーワード：領土ナショナリズム、獨島問題、鬱陵島、石島、于山島

투 고 : 2012. 8. 31
1차 심사 : 2012. 9. 15
2차 심사 : 2012. 10. 6